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정 2000. 4. 4.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0-25호

중 략(부칙 참조)

개정 2011. 1.17.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4호

개정 2011. 1.31.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 6호

개정 2011. 3.18.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 8호

개정 2011. 3.25.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10호

개정 2011. 3.28.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11호

개정 2011. 5. 3.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14호

개정 2011. 5.13.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15호

개정 2011. 5.20.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16호

개정 2011.10.27.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61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25조 및 제30조에서 고시하도록 한 사항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금의 종류 및 내용)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예금의 종류와 종류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1) **보통예금** : 예입과 지급에 있어서 특별한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2) **저축예금** :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3) **듬뿍우대저축예금** : 개인을 대상으로 예치금액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4) **e-Postbank예금** : 인터넷뱅킹 또는 우체국 창구를 통해 가입하고 전자금융 채널(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을 통해 거래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5) **웰빙우대저축예금** : 웰빙컨셉에 맞는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며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이율을 제공하는 수시입출식 예금
- 6) **주니어우대저축예금** : 자녀의 교육비 마련과 용돈을 관리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수시입출식 예금
- 7) **2040⁺ 저축예금** : 봉급생활자와 카드가맹점, 법인 등의 편익 제고를 위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 및 각종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8) **기업든든MMDA통장** : 법인, 단체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예치금액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9) **행복지킴이통장** :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 전용통장」 예금상품을 개발하여 저 소득층 생활안정 및 경제활동 지원 도모

나. 거치식 예금

- 1) **정기예금** : 일정의 약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는 지급청구를 하지 않고 기간 만료시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일시에 예입하는 예금
- 2) **챔피언정기예금** : 일정의 약정기간을 정하여 이자를 만기일시 지급식으로 선택한 경우 예치기간 중 2회까지 분할해지가 가능한 정기예금
- 3)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 : 예금 만기시 원금은 100% 지급을 보장하며, 주가지수의 변동에 연계하여 고수익을 실현 할 수 있는 정기예금
- 4) **실버우대정기예금** :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수입원이 있는 실버 고객의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실버전용 정기예금
- 5) **실버우대연금예금** :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수입원이 있는 실버 고객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한 연금 지급식 실버전용 정기예금
- 6) **주니어우대정기예금** : 19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저축의식 함양목적 및 주니어전용으로서의 안정적인 목돈운영을 위한 정기예금
- 7) **이웃사랑정기예금** : 사회 소외계층, 사랑 나눔 실천자 및 농어촌 지역 주민의 경제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기예금 상품
- 8) **e-Postbank정기예금** : 인터넷뱅킹으로만 상품 가입과 해지가 가능하며 전자금융과 연계된 우대이율 등을 제공하는 전자금융 전용 정기예금
- 9) **2040⁺ 정기예금** : 봉급생활자와 카드 가맹점, 법인 등의 안정적

자금운용을 위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예금

- 10) **그린보너스정기예금** :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 줄이기 등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홍보·선도하기 위해 녹색생활 실천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예금
- 11) **우체국S뱅킹정기예금** :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스마트폰(전용)으로 가입하고, 스마트폰 이용고객에게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한정판매 정기예금

다. 적립식예금

- 1) **정기적금** : 일정기간 후에 약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예금자가 일정금액을 일정일에 예입하는 예금
- 2) **가계우대정기적금** : 개인만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후에 약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예금자가 일정금액을 일정일에 예입하는 예금
- 3) **Postbank비과세주택마련저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및 소득세법 제5조(특별공제)에 의거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
- 4) **이웃사랑자유적금** : 사회 소외계층, 사랑 나눔 실천자 및 농어촌 지역 주민의 경제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상품
- 5) **가족다사랑적금** : 출산율 증대와 경로사상 함양 등의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공익형 예금
- 6) **주니어우대자유적금** : 자녀의 교육비 마련과 용돈을 관리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자유적립식 예금

- 7) **우체국 새봄자유적금** : 저 신용 서민의 자립 지원을 위해 기본 금리 외 연 7.0%p의 특별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자유적립식 적금
- 8) **2040⁺ 자유적금** : 봉급생활자와 카드 가맹점, 법인 등의 자유로운 목돈 마련을 위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예금
- 9) 더불어 자유적금 :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경제지원을 위해 특별우대(Double금리)혜택을 제공하는 자유적립식 적금

라. 기 타

- 1) **국고예금** : 정부의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는 관서운영경비 출납 공무원이 교부받은 자금을 예치·사용하기 위해 개설하는 일종의 보통예금
- 2) **환매조건부채권**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

제3조(예금종류별 가입대상 및 예금액의 제한) 법률 제11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예금의 가입대상 및 종류별 예입 최고한도액 또는 최저액은 다음과 같다.

예금종별	가입대상	예입 최고한도액 또는 최저액
보통예금	제한없음	제한없음
저축예금	개인	제한없음

예금종별	가입대상	예입 최고한도액 또는 최저액
덤뽕우대저축예금	개인	제한없음
e-Postbank예금	개인으로서 인터넷뱅킹 가입자	제한없음
웰빙우대저축예금	개인(1인 1계좌)	제한없음
주니어우대저축예금	만19세 미만 개인(1인 1계좌)	제한없음
2040 ⁺ 저축예금	제한없음(1인 1계좌)	제한없음
기업든든MMDA통장	법인, 단체 및 개인사업자	제한없음
우체국행복지킴이통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한없음
정기예금	제한없음	1만원 이상
챔피언정기예금	제한없음	1만원 이상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	제한없음	100만원 이상
실버우대정기예금	만50세 이상 개인(1인 1계좌)	1,000만원이상
실버우대연금예금	만50세 이상 개인(1인 1계좌)	1,000만원이상
주니어우대정기예금	만19세 미만 개인(1인 1계좌)	1만원이상
이웃사랑정기예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의 사회 소외계층과 장기기증(희망등록)자, 헌혈자 등 사랑나눔실천자 및 농어촌 주민	1만원 이상
e-Postbank정기예금	개인으로서 인터넷뱅킹 가입자	1,000만원 이상
2040 ⁺ 정기예금	제한없음	1만원 이상
그린보너스정기예금	개인	1인당 3,000만원(1만원 이상)
우체국S뱅크정기예금	개인으로서 스마트폰뱅킹 가입자 (1인1계좌)	1인당 2,000만원(1만원 이상)
정기적금	제한없음	월1만원 이상
가계우대정기적금	개인	1인당 5,000만원 이하
Postbank비과세 주택마련저축	계약당시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전용면적 85㎡(25.7평)이하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 1주택(다가구 주택인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매분기 300만원 이내 적립

예금종별	가입대상	예입 최고한도액 또는 최저액
이웃사랑자유적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의 사회 소외계층과 장기기증(희망등록)자, 헌혈자 등 사랑나눔실천자 및 농어촌 주민(1인 2계좌)	1계좌당 3,000만원 이하 (가입시 1만원 이상)
가족다사랑적금	개인(1인 1계좌)	월1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주니어우대자유적금	만19세 미만 개인(1인 1계좌)	제한없음(가입시 1만원이상)
우체국새봄자유적금	신용등급 7등급 이하(7~10등급)이며, 만20세 이상의 개인(1인 1계좌)	300만원 이하 (가입시 1만원 이상)
2040 [※] 자유적금	제한없음	제한없음(가입시 1만원 이상)
더불어자유적금	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저소득층(1세대 1명(1계좌))	가입시1만원이상 (분기당최대100만원 / 총 저축한도 900만원)
국고예금	관서운영경비(일상경비) 출납공무원	제한없음
환매조건부채권	· 일반형 : 제한없음 · 확정형 : 개인	· 일반형 : 5만원 이상 · 확정형 : 1,000만원 이상

제4조(예치기간 및 이자율) 법률 제14조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별 이자율

1) 보통예금

가) 예치기간 : 제한없음

나) 이자율 : 연 0.1%

2) 저축예금

가) 예치기간 : 제한없음

나) 이자율 : 연 0.2%

3) 등액우대저축예금

가) 예치기간 : 제한없음

나) 이자율

(1) 개인

예치금액	이자율(연 %)
○ 5백만원 미만	0.1
○ 5백만원 ~ 1천만원 미만	0.2
○ 1천만원 ~ 3천만원 미만	0.3
○ 3천만원 ~ 5천만원 미만	0.5
○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 1억원 이상	1.7

(2) 법인/단체

예치금액	이자율(연 %)
-5천만원 미만	0.1
-5천만원 ~ 1억원 미만	0.2
-1억원 ~ 5억원 미만	0.5
-5억원 ~ 50억원 미만	별도금리
-50억원 ~ 500억원 미만	별도금리
-500억원 이상	별도금리

※ 2011.5. 3.일 이전에 가입한 법인고객(단체포함)에 한하여 상기 이율 적용

(3) 금융기관

예치금액	이자율(연 %)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 1억원 미만	0.1
-1억원 ~ 5억원 미만	0.3
-5억원 ~ 10억원 미만	0.8
-10억원 ~ 100억원 미만	1.1
-100억원 ~ 500억원 미만	별도금리
-500억원 이상	별도금리

※ 선입선출방식에 의하여 예치기간 7일미만의 금액은 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되, 법인(금융기관 제외) 및 단체의 500억원 이상은 1일부터 이자계산

※ 2011.5.3.일 이전에 가입한 금융기관 고객에 한하여 상기 이율 적용

4) e-Postbank 예금

가) 예치기간 : 제한없음

나) 이자율

(1) 기본이율 : 연 0.5%

(2) 우대이율 : 최고 연 1.5%p

5) 웰빙우대저축예금

가) 예치기간 : 제한없음

나) 이자율 : 결산기간 중 평균잔액 기준

(1) 50만원 미만 : 연 0.2%

(2) 50만원 이상 : 연 1.0%

6) 주니어우대저축예금

가) 예치기간 : 제한없음

나) 이자율 : 결산기간 중 평균잔액 기준

(1) 10만원 미만 : 연 0.2%

(2) 10만원 이상 : 연 0.5%

7) 2040⁺ 저축예금

가) 예치기간 : 제한없음

나) 이자율

(1) 기본이율 : 연 0.2%

(2) 우대이율 : 매 결산기별 약정 및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연 1.0%p

8) 기업든든MMDA통장

가) 예치기간 : 제한없음

나) 이자율

예치금액	이자율(연 %)
o 5천만원 미만	0.2
o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3
o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0.8
o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4
o 10억원 이상	본부금리

※ 입금건별 300억원 이상 시 본부에서 별도 승인한 '특별금리'적용 가능

9) 우체국행복지킴이통장

가) 예치기간 : 제한없음

나) 이자율 : 결산기간 중 평균잔액 기준

(1) 10만원 미만 : 연 0.5%

(2) 10만원 이상 : 연 1.0%

나. 거치식예금 상품별 이자율

1) 정기예금

가) 예치기간 : 1개월~3년 이하(연단위, 월단위)

나) 이자율

(1) 기본이율

예치기간	이율(연 %)			
	월이자지급식		만기일시지급식	
	개인·법인	금융기관	개인·법인	금융기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만기	1.7	1.7	1.7	1.7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만기	2.1	2.1	2.1	2.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만기	2.3	2.3	2.4	2.4
-9개월 이상 1년 미만 만기	2.5	2.5	2.6	2.6
-1년 이상 1년6개월 미만 만기	2.6	2.6	2.8	2.8
-1년6개월 이상 2년 미만 만기	2.8	2.8	3.0	3.0
-2년 이상 2년6개월 미만 만기	2.9	2.9	3.1	3.1
-2년6개월 이상 3년 미만 만기	3.0	3.0	3.2	3.2
-3년 만기	3.1	3.1	3.3	3.3

(2) 중도해지이율

예치기간	이율(연 %)
-1개월 미만	0.2
-1개월 이상 경과분	1.0
-3개월 이상 경과분	1.5
-1년 이상 경과분	2.0
-2년 이상 경과분	2.0

(3) 만기후이율

(가) 6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 해당예금 계약기간별 고시이율의 1/2

(나) 6개월 초과 : 만기일 당시 보통예금 이율

2) 챔피언정기예금

가) 확정금리형

(1) 예치기간 : 30일~3년 이하(연단위, 월단위, 일단위)

단, 월단위 가입은 가입기간이 2월 이상이어야 함

(2) 이자율

(가) 기본이율

예치기간	이율(연 %)			
	월이자지급식		만기일시지급식	
	개인·법인	금융기관	개인·법인	금융기관
-30일 이상 3개월 미만 만기	1.7	1.7	1.7	1.7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만기	2.1	2.1	2.1	2.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만기	2.3	2.3	2.4	2.4
-9개월 이상 1년 미만 만기	2.5	2.5	2.6	2.6
-1년 이상 1년6개월 미만 만기	2.6	2.6	2.8	2.8
-1년6개월 이상 2년 미만 만기	2.8	2.8	3.0	3.0
-2년 이상 2년6개월 미만 만기	2.9	2.9	3.1	3.1
-2년6개월 이상 3년 미만 만기	3.0	3.0	3.2	3.2
-3년 만기	3.1	3.1	3.3	3.3

※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하여 중도이자 지급시에는 월이자지급식 이율 적용

(나) 우대이율

① 우체국장전결우대금리 또는 본부장전결우대금리

② 우수고객우대금리 또는 급여이체자우대금리

③ 전환우대이율

(다) 중도해지이율 : 정기예금과 동일

(라) 분할해지이율 : 가입당시 중도해지 이율과 동일

(마) 만기후이율 : 정기예금과 동일

나) 1년 확정형

(1) 예치기간 : 2년~3년 이하(연단위, 월단위, 일단위)

(2) 이자율

(가) 기본이율 : 가입일 및 가입일로부터 매 1년 경과시점의 챔피언

정기예금 확정금리형 1년 만기이율을 매 1년간 적용

(나) 우대이율

① 우체국장전결우대금리 또는 본부장전결우대금리

② 우수고객우대금리 또는 급여이체자우대금리

(다) 중도해지 및 분할해지 이율

① 1년 미만 : 가입당시 챔피언정기예금 확정금리형 중도해지
이율과 동일

② 1년 이상

- 연단위 경과분 : 해당기간별 매 1년 챔피언정기예금 확정금리형
약정이율

- 1년 미만 잔여기간 : 매년 금리 적용시점의 챔피언정기예금
확정금리형 중도해지이율

(라) 만기후이율 : 가입당시 챔피언정기예금 확정금리형 만기후
이율과 동일

3)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

가) 판매기간 : 예금의 모집기간(일반적으로 판매일로부터 10일간)

나) 예금기간 : 6개월, 1년

(판매기간 종료 익 영업일(기준지수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다) 지수적용 : 비교지수일^{주1)} 종가와 기준지수일^{주2)} 종가의 등락을
계산하여 상승과 하락에 따른 제시금리 적용

※ 주1) : 동 상품의 만기일을 포함하여 만기 전 제 3영업일

주2) : 예금기간의 시작일

4) 실버우대정기예금

가) 예치기간 : 1년 ~ 3년(연단위)

나) 이자율

(1) 기본이율 : 신규 가입일 현재 정기예금 예치기간별 기본이율

(2) 우대이율

(가) 우체국장전결우대금리

(나) 실버금리 : 연 0.2%p

(다) 보너스금리 : 최고 연 0.2%p

(3) 중도해지이율 : 정기예금과 동일

(4) 만기후이율 : 정기예금과 동일

5) 실버우대연금예금

가) 예치기간 : 거치기간+연금지급기간

(1) 거치기간^{주1)} : 1년~10년(연단위)

(2) 연금지급기간^{주2)} : 1년~20년(연단위)

※ 주1 : 원리금을 연금식으로 지급받기 전에 일정기간 예치하는 기간

주2 : 거치기간 종료 후 예금의 원리금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받는 기간

나) 이자율

(1) 기본이율

(가) 거치기간 : 신규 가입일 현재 정기예금 만기일시지급식

예치기간별 기본이율 적용

※ 1년, 2년, 3년 단위의 금리변동주기 선택하며, 매 금리변동주기

해당일마다 고시한 이율로 금리변동하며 복리계산(세후 복리계산)

(나) 연금지급기간 : 연금지급 개시일 현재 고시한 정기예금

1년만기(월이자지급식) 이율 적용(1년단위 변동금리)

※ 매 1년 신규가입일 해당일마다 고시한 이율로 금리변동하며

단리계산

(2) 우대이율

(가) 우체국장전결우대금리

(나) 실버금리 : 연 0.2%p

(다) 보너스금리 : 최고 연 0.2%p

(3) 중도해지이율 : 정기예금과 동일

(4) 만기후이율 : 정기예금과 동일

6) 주니어우대정기예금

가) 예치기간 : 1년~3년(월단위)

나) 이자율

(1) 기본이율 : 신규 가입일 현재 정기예금 예치기간별 기본이율

(2) 우대이율

(가) 우체국장전결우대금리

(나) 주니어금리 : 연 0.1%p

(다) 보너스금리 : 최고 연 0.1%p

(3) 중도해지이율 : 정기예금과 동일

(4) 만기후이율 : 정기예금과 동일

7) 이웃사랑정기예금

가) 예치기간 : 6개월~3년(월단위)

나) 이자율

(1) 기본이율 : 신규 가입일 현재 챔피언정기예금 예치기간별 기본이율

(2) 우대이율

(가) 우체국장전결우대금리

(나) 사랑금리 : 연 0.2%p

(다) 보너스금리 : 최고 연 0.2%p

(3) 중도해지이율 : 정기예금과 동일

(4) 분할해지이율 : 가입당시 중도해지 이율과 동일

(5) 만기후이율 : 정기예금과 동일

8) e-Postbank 정기예금

가) 예치기간 : 6개월 ~ 3년(월단위 또는 연단위)

나) 이자율

(1) 기본이율 : 신규 가입일 현재 챔피언정기예금 만기일시지급식

예치기간별 기본이율

(2) 우대이율

(가) 인터넷뱅킹우대금리

(나) 보너스금리 : 최고 연 0.4%p

(3) 중도해지이율 : 정기예금과 동일

(4) 만기후이율 : 정기예금과 동일

9) 2040*^a 정기예금

가) 예치기간 : 6개월 ~ 3년(월단위)

나) 이자율

(1) 기본이율 : 신규 가입일 현재 챔피언정기예금 예치기간별 기본이율

(2) 우대이율

(가) 우체국장전결우대금리

(나) 보너스금리 : 최고 연 0.4%p

(3) 중도해지이율 : 정기예금과 동일

(4) 특별 중도해지이율 :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가입 당시 기본이율

(5) 만기후이율 : 정기예금과 동일

10) 그린보너스정기예금

가) 예치기간 : 1년

나) 이자율

(1) 기본이율 : 신규 가입일 현재 챔피언정기예금 만기일시지급식 기본이율

(2) 우대이율

(가) 우체국장전결우대금리

(나) 그린금리 : 최고 연 0.2%p

(다) 보너스금리 : 최고 연 0.3%p

(3) 중도해지이율 : 정기예금과 동일

(4) 만기후이율 : 정기예금과 동일

11) 우체국S뱅킹정기예금

가) 예치기간 : 1년

나) 이자율

(1) 기본이율 : 신규 가입일 현재 정기예금 만기일시지급식 예치
기간별 기본이율

(2) 우대이율 : 인터넷뱅킹우대금리 + 연 0.5%p

(3) 중도해지이율 : 정기예금과 동일

(4) 만기후이율 : 정기예금과 동일

다. 적립식예금 상품별 이자율

1) 정기적금

가) 예치기간 : 6개월~3년(월단위)

나) 이자율

(1) 기본이율

예치기간	이율(%)
-6개월 이상 1년 미만 만기	2.6
-1년 이상 2년 미만 만기	3.1
-2년 이상 3년 미만 만기	3.6
-3년 만기	3.8

(2) 우대이율 : 연0.1%p

(3) 중도해지이율

예치기간	이율(%)
-30일 미만	0.2
-30일 이상 1년 미만	1.0
-1년이상 경과분	2.0

※ 만기도래 전 해약 시 차감이율 : 가입 당시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 + 2%p

(4) 만기후이율

(가) 6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 해당예금 계약기간별 고시이율의 1/2

(나) 6개월 초과 : 만기일 당시 보통예금 이율

2) 가계우대정기적금

가) 예치기간 : 6개월~3년(월단위)

나) 이자율

(1) 기본이율

예치기간	이율(%)
-6개월 이상 1년 미만 만기	2.8
-1년 이상 2년 미만 만기	3.3
-2년 이상 3년 미만 만기	3.8
-3년 만기	4.0

(2) 우대이율 : 연0.1%p

(3) 중도해지이율 : 정기적금과 동일

(4) 만기후이율 : 정기적금과 동일

3) Postbank 비과세 주택마련저축

가) 예치기간 : 7년~30년(연단위)

나) 이자율

(1) 기본이율

(가) 가입일로부터 최초 3년 까지 : 연 3.7%

(나) 3년 초과 만기일 까지 : 3년 경과시점의 동 예금 약정이자율을

적용하되 이후 약정이자율 변경 시에는 이자율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이자율 적용

(2) 중도해지이율

예치기간	이율(%)
- 30일 미만	0.2
- 30일 이상 1년미만	1.0
- 1년이상 3년미만	2.0
- 3년이상 5년미만	3.0
- 5년이상	약정이율

※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5년 이상 납입한 경우 만기이율을 적용함

(3) 만기후이율

(가) 6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 동 예금 약정이율의 1/2

(나) 6개월 초과 : 만기일 당시 보통예금 이율

4) 이웃사랑자유적금

가) 예치기간 : 6개월 ~ 3년(월단위)

나) 이자율

- (1) 기본이율 : 신규 가입일 현재 정기적금 예치기간별 기본이율
- (2) 우대이율 : 연 0.3%p
- (3) 중도해지이율 : 정기적금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 + 연 0.3%p
- (4) 특별중도해지이율 : 정기적금 예치기간별 만기이율
- (5) 만기후이율 : 정기적금과 동일

5) 가족多사랑적금

가) 예치기간 : 6개월 ~ 3년

나) 이자율

- (1) 기본이율
 - (가) 정기적립식 : 정기적금 예치기간별 기본이율
 - (나) 자유적립식 : 정기적금 예치기간별 기본이율 - 연 0.1%p
- (2) 우대이율 : 최고 연 0.8%p
- (3) 중도해지이율 : 정기적금과 동일
- (4) 만기후이율 : 정기적금과 동일

6) 주니어우대자유적금

가) 예치기간 : 1년~3년(연단위)

나) 이자율

- (1) 기본이율 : 정기적금 예치기간별 기본이율 + 연 0.1%p
- (2) 우대이율 : 최고 연 0.2%p

(3) 중도해지이율 : 정기적금과 동일

(4) 만기후이율 : 정기적금과 동일

7) 우체국 새봄자유적금

가) 예치기간 : 1년

나) 이자율

- (1) 기본이율 : 신규 가입일 현재 정기적금 1년 만기 기본이율 - 연 0.1%p
- (2) 우대이율 : 연 7.0%p
- (3) 중도해지이율 : 가입일 당시 정기적금 중도해지 이율
- (4) 만기후이율 : 정기적금과 동일

8) 2040*^a 자유적금

가) 예치기간 : 6개월 ~ 3년(월단위)

나) 이자율

- (1) 기본이율 : 신규 가입일 현재 정기적금 예치기간별 기본이율
- (2) 우대이율 : 최고 연 0.4%p
- (3) 중도해지이율 : 정기적금과 동일
- (4) 특별 중도해지이율 :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정기적금 가입 당시 기본이율
- (5) 만기후이율 : 정기적금과 동일

9) 더블어자유적금

가) 예치기간 : 6개월 ~ 3년(월단위)

나) 이자율

- (1) 기본이율 : 가입일 정기적금 기간별 기본이율 - 연 0.1%p
- (2) 우대이율 : 기본금리와 동일한 이율 제공
- (3) 중도해지이율 : 가입일 당시 정기적금 중도해지 이율 적용
- (4) 만기 후 이율 : 정기적금과 동일

라. 기타 상품별 이자율

1) 국고예금

가) 예치기간 : 제한없음

나) 이자율

- (1)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무이자
- (2)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및 기타회계 : 보통예금 이자율 적용

2) 환매조건부채권

가) 일반형 환매조건부채권

- (1) 약정기간 : 1년
- (2) 환매수 이율 : 예치기간별 이율 적용

예치기간	이자율(%)	
	개인·법인	금융기관
- 7일 미만	-	-
- 7일 이상 15일까지	0.1	-
- 16일 이상 30일까지	1.0	0.5
- 31일 이상 60일까지	1.9	1.4
- 61일 이상 90일까지	2.0	1.5
- 91일 이상 180일까지	2.2	1.7
- 181일 이상 270일까지	2.4	2.0
- 271일 이상 1년까지	2.7	2.3

나) 확정형 환매조건부채권

- (1) 약정기간 : 1년 만기로 확정
- (2) 환매수 이율 : 챔피언정기예금 만기일시지급식 1년 만기이율 + 0.05%p
 - 1년 이내 환매수 청구 시 :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 적용
 - 1년 이후 환매수 청구 시 : 정기예금 만기후이율 적용

마. 우대금리

1) 전결 우대금리

구 분	대상 상품	우대이율
본부장전결 우대금리	챔피언정기예금	2.8%p 이내
우체국장전결 우대금리	정기예금(생계형), 챔피언정기예금, 실버우대정기예금, 실버우대연금예금, 주니어우대정기예금, 이웃사랑정기예금, 2040 ^{ta} 정기예금, 그린보너스정기예금,	2.0%p 이내

2) 인터넷뱅킹우대금리 : 우체국장전결우대금리내에서 운영

※ e-Postbank정기예금, 우체국S뱅크정기예금, 인터넷챔피언정기예금

3) 우수고객 우대금리

가) 개인고객

(1) Everrich S-MVP, Everrich MVP

대상 상품	우대이율	비 고
챔피언정기예금	예치기간별 0.05%p~0.15%p	-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 0.05%p - 12개월이상 24개월미만 : 0.1%p - 24개월이상 36개월미만 : 0.15%p
정기예금(생계형)		
2040 ^{ta} 저축예금 2040 ^{ta} 자유적금 2040 ^{ta} 정기예금	0.1%p	예치기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2) Everrich VIP

대상 상품	우대이율	비 고
2040 ^{※a} 저축예금 2040 ^{※a} 자유적금 2040 ^{※a} 정기예금	0.1%p	예치기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 중도해지 또는 분할해지 시 및 만기 후 이율은 우대이율 미적용

나) 법인 및 임의단체 고객 : Everrich S-MVP, Everrich MVP, Everrich VIP

대상 상품	우대이율	비 고
2040 ^{※a} 저축예금 2040 ^{※a} 자유적금 2040 ^{※a} 정기예금	0.1%p	예치기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 중도해지 또는 분할해지 시 및 만기 후 이율은 우대이율 미적용

4) 급여이체자 우대금리

대상 상품	우대이율	비 고
2040 ^{※a} 저축예금	0.3%p	※ 단, 결산일 기준으로 급여계좌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함
e-Postbank예금	0.2%p	
챔피언정기예금 (인터넷포함)	예치기간별 0.05%p~0.15%p	- 6개월이상 12개월 미만 : 0.05%p - 12개월이상 24개월 미만 : 0.1%p - 24개월이상 36개월 미만 : 0.15%p ※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으며, 타 기준에 의한 추가 금리우대는 배제
2040 ^{※a} 정기예금	0.1%p	예치기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2040 ^{※a} 자유적금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할 우체국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창구업무취급시간

구분	창구업무 취급시간	비고
1월 ~ 12월	평일 09:00 ~ 16:30	연중 계절 구분 없이 동일함

나. 예외적으로 국제송금 및 국제환은 매달 넷째 주 일요일 10:00 ~

16:00에 접수 업무를 취급 하며, 취급우체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넷째 주 일요일이 고유명절, 성탄절, 석탄절인 경우는 셋째 주 일요일에 취급

제6조(이자의 계산)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예금 종류별 이자의 계산방법 및 정기계산시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1)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한다. 적수계산은 입출금 거래 발생일마다 최종잔액에 예치일수를 곱하여 적수를 산출하고 계산기준일까지 누적시키고, 적수는 윤·평년 구별 없이 365일로 나누어 이자를 계산한다.

$$\text{이자액} = \text{적수} \times \text{누계 액} \times \text{연이율} \div 365 \text{ (10원미만 절사)}$$

2) 들뽕우대저축예금 중 법인(단체 및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의 이자 계산은 예입순서가 빠른 것부터 인출되는 선입선출방식으로 예치 기간이 7일미만의 금액은 이자계산 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최초예금일(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한다.

3) 기업든든MMDA통장의 이자계산은 예입순서가 빠른 것부터 인출되는

선입선출방식으로 예치기간이 7일미만의 금액은 이자계산 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최초예금일(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한다.

4) 이자의 정기계산

가) 보통예금은 6월 넷째 토요일 및 12월 말일에 이자를 계산하고 각각 그 익일 원금에 가산한다.

나) 저축예금, 웰빙우대저축예금, 주니어우대저축예금, e-Postbank 예금은 3월, 6월, 9월 및 12월의 첫째 토요일에 이자를 계산하고 각각 그 익일 원금에 가산한다.

다) 듬뿍우대저축예금은 예금 잔액에 대하여 매일 이자를 계산한 후 1월에서 11월까지의 매월 넷째 토요일에, 12월분은 12월 말일에 이자를 계산한 후 각각 그 익일 원금에 가산한다.

라) 2040⁺저축예금, 행복지킴이통장은 3월, 6월, 9월의 셋째 토요일 및 12월 말일에 이자를 계산하고 각각 그 익일 원금에 가산한다.

마) 기업든든MMDA통장은 3월, 6월, 9월의 셋째 토요일 및 12월 말일에 이자를 계산하고 각각 그 익일 원금에 가산한다.

나. 거치식 예금

1) 거치식예금의 이자계산은 일단위로 일할 계산한다.

2) 이자계산은 다음 공식에 의한다.

가) 월이자지급식 : 월이자 = 원금 × 연이율 × $\frac{\text{예치일수}}{365}$

나) 만기일시지급식 : 지급이자 = 원금 × 연이율 × $\frac{\text{예치일수}}{365}$

3) 실버우대연금예금의 이자계산은 연이율과 예치기간을 곱하여 일단위로 일할 계산한다.

가) 예치기간에는 매 금리변동주기 해당일마다 고시한 이율에 재산정된 우대이율을 합산한 이율로 변동되며 금리변동주기 단위로 복리이자 계산한다.

거치기간의 이자 = 원금 × 연이율 × $\frac{\text{예치일수}}{365}$

나) 연금지급기간에는 매 1년 연금지급 개시일 해당일마다 고시한 이율에 실버금리를 합산한 이율로 변동되며 단리로 이자계산한다.

매 연금회차 이자 = 매 연금회차 원리금잔액 × 연이율 × $\frac{\text{예치일수}}{365}$

4) 정기예금 중도해약

월별로 이자를 지급받는 정기예금 예금자가 중도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원금에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서 지급된 이자를 차감하고 지급한다.

5) 만기일의 산정

가) 거치식예금의 가입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달의 예입일의 해당일을 만기일로 하되, 마지막 달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달의 말일을 만기일로 한다.

나) 거치식예금의 가입기간을 일로 정한 때에는 예입일로부터 기산

하여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을 만기일로 한다.

다. 적립식 예금

1) 적립식예금의 만기 시 지연일수가 선납일수보다 많은 때에는 이 연일수를 만기일에 가산하여 지급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2) 만기일의 산정

가입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달의 예입일의 해당일을 만기일로 하되, 마지막 달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달의 말일을 만기일로 한다.

라. 일반형 환매조건부채권은 예치일부터 환매수 신청일까지 경과일수에 대해 약정이율을 지급하되 1년을 초과하여 환매수를 청구할 경우 1년 초과일수에 대해서는 매 1년 경과시점의 예치기간별 이율로 계산한다.

부칙 <제정 2002.6.27.>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 및 환매조건부채권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2.10.5.>

이 고시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2.11.15.>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2.12.2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후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3.1.14.>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1월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기예금

만기일시지급식은 2003년 3월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③ **(판매중지)** 자유저축예금은 2003년 1월 17일부터 신규가입을 중지한다.

부칙 <개정 2003.2.3.>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기예금 만기일시지급식은 200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3.2.12.>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기예금 만기일시지급식을 2003년 3월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3.2.18>

① **(시행일)** 제3항(예치기간 및 이자율)의 변경내용은 2003년 3월3일 지급분부터, 제4항(예금의 예입방법 등)의 변경내용은 2003년 3월 10일 신규가입분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2.24.>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2월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기예금 만기일시지급식은 200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3.2.28.>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우대이율적용 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3.3.24.>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4.3.>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3.4.28.>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국고예금은 2003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3.5.1.>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7.24.>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 ③ **(우대이율 지급예금 확대)** 챔피언정기예금에 적용하던 최우수고객 우대이율은 2003년 4월 1일 계약분부터 세금만족정기예금 및 생계형 정기예금에 확대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3.8.21.>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3.9.18.>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3.12.2.>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3.2.>

부칙 <개정 2003.12.12.>

① (챔피언정기예금 이자율 일시 조정) 챔피언정기예금(예치기간 : 1년 이상 2년 미만)의 신규계약금액이 1조원 달성일까지 챔피언정기예금의 이자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예치기간	이율(%)			
	월이자지급식		만기일시지급식	
	개인·법인	금융기관	개인·법인	금융기관
-30일이상 3개월미만만기	3.1	3.0	3.1	3.0
-3개월이상 6개월미만만기	3.4	3.3	3.4	3.3
-6개월이상 1년미만만기	3.65	3.55	3.65	3.55
-1년이상 2년미만만기	4.2	3.8	4.3	3.9
-2년이상 3년미만만기	4.0	3.9	4.2	4.1
-3년 만기	4.1	4.0	4.4	4.3

※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하여 중도이자 지급시 월이자지급식 이율 적용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4.1.3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4.3.26.>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4.4.16.>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04년 5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 (유효기간 경과시 적용례) 2004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는 인터넷챔피언정기예금의 이율은 이 고시 시행이전의 이율을 적용한다.

④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4.4.23.>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4.6.3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7.2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4.8.2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부칙 <개정 2004.8.25.>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환매조건부채권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4.9.6.>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9.16.>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4.11.17.>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4.12.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I-Card 정기예금 관련사항은 2004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12.24.>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5.2.25.>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5.3.7.>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3.18.>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우체국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5.3.31.>

① (예치한도 일시 조정) 제2항의 I-Card정기예금 예치한도에도 불구하고 2005년 4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I-Card정기예금 예치한도는 200만원 이상 2,500만원 이하로 한다.

② (I-Card정기예금 이자율 일시 조정) 제3항 서호에도 불구하고 2005년 4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현대카드-I를 신청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I-Card정기예금의 이자율은 최초 가입 후 1년은 가입당시 챔피언정기예금 1년만기 고시금리 + 0.3%p를 적용한다. 이 예금 가입 1년 이후 가입 응당일에 자동 재가입된 경우에는 가입 응당일의 챔피언정기예금 1년만기 고시금리 + 0.2%p를 적용한다.

- ③ 부칙 제1항 및 제2항은 신규 계약금액이 2,000억원을 초과시에는 초과하는 시점의 가입예금까지만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5.6.10.>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8.19.>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②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과 동시에 가입하는 만기일시지급식 챔피언 정기예금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정기예금 이율에 0.3%를 추가로 우대하여 지급한다. 단,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과 가입금액, 가입일, 가입기간 및 만기일이 동일하여야 한다.
- ③ 부칙 제2항의 조건으로 가입한 챔피언정기예금은 분할해지를 할 수 없으며,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 또는 챔피언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추가 우대금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중도해지한 챔피언정기예금 이율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5.9.21.>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9.28.>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9.28.>

-

- ① (챔피언정기예금 이자율 일시 조정) 2005년 10월 4일부터 2005년 10월 14일까지 챔피언정기예금의 이자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다만, 2005년 10월 4일부터 챔피언정기예금(인터넷챔피언정기예금 및 I-Card정기예금 포함) 신규 계약금액이 1조원을 초과시에는 초과일 당일까지만 적용한다.

예치기간	이율(%)			
	월이자지급식		만기일시지급식	
	개인.법인	금융기관	개인.법인	금융기관
-30일이상 3개월미만만기	3.0	3.0	3.0	3.0
-3개월이상 6개월미만만기	3.2	3.2	3.2	3.2
-6개월이상 1년미만만기	3.4	3.4	3.4	3.4
-1년이상 2년미만만기	4.2	3.5	4.3	3.6
-2년이상 3년미만만기	3.5	3.5	3.6	3.6
-3년만기	3.5	3.5	3.7	3.7

※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하여 중도이자 지급시 월이자지급식 이율 적용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5.10.7.>

① (챔피언정기예금 이자율 일시 조정) 2005년 10월 4일부터 2005년 10월 14일까지 챔피언정기예금의 이자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예치기간	이율(%)			
	월이자지급식		만기일시지급식	
	개인.법인	금융기관	개인.법인	금융기관
-30일이상 3개월미만만기	3.0	3.0	3.0	3.0
-3개월이상 6개월미만만기	3.2	3.2	3.2	3.2
-6개월이상 1년미만만기	3.4	3.4	3.4	3.4
-1년이상 2년미만만기	4.2	3.5	4.3	3.6
-2년이상 3년미만만기	3.5	3.5	3.6	3.6
-3년만기	3.5	3.5	3.7	3.7

※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하여 중도이자 지급시 월이자지급식 이율 적용

② 기존의 단서조항 “2005년 10월 4일부터 챔피언정기예금(인터넷챔피언 정기예금 및 I-Card정기예금 포함) 신규 계약금액이 1조원을 초과 시에는 초과일 당일까지만 적용한다.”를 삭제한다.

③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5.10.17.>

① (챔피언정기예금 이자율 일시 조정) 2005년 10월 17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챔피언정기예금의 이자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다만, 시장금리 우체국예금 수신고 증감현황 등을 고려하여 상기 판매기간 이전에 판매를 중지할 수 있음

예치기간	이율(%)			
	월이자지급식		만기일시지급식	
	개인.법인	금융기관	개인.법인	금융기관
-30일이상 3개월미만만기	3.0	3.0	3.0	3.0
-3개월이상 6개월미만만기	3.2	3.2	3.2	3.2
-6개월이상 1년미만만기	3.4	3.4	3.4	3.4
-1년이상 2년미만만기	4.2	3.5	4.3	3.6
-2년이상 3년미만만기	3.5	3.5	3.6	3.6
-3년만기	3.5	3.5	3.7	3.7

※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하여 중도이자 지급시 월이자지급식 이율 적용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5.10.26.>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5.11.2.>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1월 7일부터 11월 16까지 가입한 예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부칙 제1항의 기간 중에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과 동시에 가입하는 만기일시지급식 챔피언정기예금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정기예금 이율에 0.3%를 추가로 우대하여 지급한다. 단,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과 가입금액, 가입일, 가입기간 및 만기일이 동일하여야 한다.

③ 부칙 제2항의 조건으로 가입한 챔피언정기예금은 분할해지를 할 수 없으며,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 또는 챔피언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추가 우대금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중도해지한 챔피언정기예금 이율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5.11.17.>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11.18.>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11.2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12.22.>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항 아호는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1.17.>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6.4.28.>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적금 및 틈뎡우대저축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6.6.15.>

부칙 <개정 2006.10.26.>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챔피언정기예금포함), 환매조건부 채권, 담백우대저축, 비과세 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는 계약 당시 이율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6.8.3.>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8월 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8.24.>

이 고시는 200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10.26.>

이 고시는 2006년 10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06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11.15.>

- ① 이 고시는 2006년 11월 17일부터 11월 29까지 가입한 예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부칙 제1항의 기간 중에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과 동시에 가입하는 만기일시지급식 챔피언정기예금(1년 만기)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 정기예금 이율에 1.0%를 추가로 우대하여 지급한다. 단, 주가지수 연계정기예금과 가입금액, 가입일, 가입기간 및 만기일이 동일하여야 한다.
- ③ 부칙 제2항의 조건으로 가입한 챔피언정기예금은 분할해지를 할 수 없으며,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 또는 챔피언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추가 우대금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중도해지한 챔피언정기예금 이율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7.2.13.>

이 고시는 200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6.2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6월 20일부터 6월 29까지 가입한 예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부칙 제1항의 기간 중에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과 동시에 가입하는

만기일시지급식 챔피언정기예금(1년 만기)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 정기예금 이율에 1.0%를 추가로 우대하여 지급한다. 단, 주가지수 연계정기예금과 가입금액, 가입일, 가입기간 및 만기일이 동일하여야 한다.

③ 부칙 제2항의 조건으로 가입한 챔피언정기예금은 분할해지를 할 수 없으며,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 또는 챔피언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추가 우대금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중도해지한 챔피언정기예금 이율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7.6.21.>

이 고시는 2007년 6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7.13.>

이 고시는 2007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7.31.>

이 고시는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9.21.>

이 고시는 2007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9.27.>

이 고시는 2007년 9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11.29.>

① 이 고시는 2007년 12월 3일부터 12월 14까지 가입한 예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부칙 제1항의 기간 중에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과 동시에 가입하는 만기일시지급식 챔피언정기예금(1년 만기)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

정기예금 이율에 1.0%를 추가로 우대하여 지급한다. 단, 주가지수 연계정기예금과 가입금액, 가입일, 가입기간 및 만기일이 동일하여야 한다.

- ③ 부칙 제2항의 조건으로 가입한 챔피언정기예금은 분할해지를 할 수 없으며,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 또는 챔피언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추가 우대금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중도해지한 챔피언정기예금 이율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7.12.28.>

이 고시는 200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2.12.>

이 고시는 200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8.21.>

이 고시는 200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7.2.>

1. 이 고시는 200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 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8.8.11>

1. 이 고시는 2008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 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8.9.3.>

1. 이 고시는 2008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 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8.9.26.>

이 고시는 2008년 10월 2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10.8.>

1.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
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8.10.23.>

1. 이 고시는 200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
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8.11.11.>

1. 이 고시는 2008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
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8.11.21.>

1. 이 고시는 2008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
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8.12.18.>

1.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
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8.12.26.>

1. 이 고시는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
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9.1.12.>

1. 이 고시는 2009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
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9.1.20.>

1. 이 고시는 2009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9.2.9.>

이 고시는 2009년 2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2.18.>

이 고시는 2009년 2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2.11.>

1. 이 고시는 200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9.3.20.>

1. 이 고시는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9.4.13.>

1. 이 고시는 2009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9.4.27.>

1. 이 고시는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9.6.4.>

1. 이 고시는 2009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9.7.15.>

이 고시는 2009년 7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8.18.>

1.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9.9.2.>

1. 이 고시는 2009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9.9.4.>

1. 이 고시는 2009년 9월 7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9.9.17.>

1. 이 고시는 2009년 9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9.10.8.>

1. 이 고시는 2009년 10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9.10.27.>

1. 이 고시는 2009년 10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0.2.9.>

부칙 <개정 2009.12.24.>

1. 이 고시는 2009년 12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9.12.31.>

1. 이 고시는 2010년 1월 5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0.1.20.>

1. 이 고시는 2010년 1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1. 이 고시는 2010년 2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0.2.25.>

1. 이 고시는 2010년 3월 2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0.3.15.>

1. 이 고시는 2010년 3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0.3.22.>

1. 이 고시는 2010년 3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0.3.25.>

1. 이 고시는 2010년 3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0.4.7.>

1. 이 고시는 2010년 4월 8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0.4.20.>

1. 이 고시는 2010년 4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0.5.18.>

1. 이 고시는 2010년 5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0.6.2.>

1. 이 고시는 2010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0.6.4.>

1. 이 고시는 2010년 6월 4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3. 예치기간 및

이자율” 중 “라. 정기예금(2)중도해지이율”의 “30일 미만 이율 0.2% 와 30일 이상 경과분 1.0%” 및 “사.정기적금(2)중도해지이율”의 “30일 미만 이율 0.2%”부분은 2010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0. 7. 01.>

1. 이 고시는 2010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8. 29.>

1. 이 고시는 2010년 8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0. 9. 8.>

이 고시는 2010년 9월 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10. 01.>

이 고시는 2010년 10월 4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12. 29.>

이 고시는 2011년 1월 3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01.17.>

이 고시는 2011년 1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01.31.>

이 고시는 2011년 1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03.18.>

1. 이 고시는 2011년 3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03.28>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의 우수고객제도 변경(2011. 2. 10 시행)에 따른 등급별 우대금리는 2011. 1월 우수고객부터 적용하되, 기존 우수고객은 서비스 기간(선정 후 6개월) 만료 시까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가입된 듬뿍우대저축예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이율과 이자계산 방식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1.03.25>

1. 이 고시는 2011년 3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 이전 가입된 듬뿍우대저축예금은 2011년 3월 결산일 (3.26)까지는 아래의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계산을 하고 2011. 3. 27부터는 매일 최종잔액을 기준으로 변경 고시된 이율을 적용한다.

구분	이율(연 %)	
	법인 및 단체	금융기관
5천만원미만	0.1	-
5천만원~1억원미만	0.2	0.1
1억원~5억원미만	0.5	0.3
5억원~10억원미만	1.0	0.8
10억원~100억원미만	1.4	1.1
100억원~300억원미만	1.5	1.2
300억원~500억원미만	1.6	1.3
500억원이상	별도금리	별도금리

1. 이 고시는 2011년 3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5. 3>

1. 이 고시는 2011년 5월 3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5. 13>

1. 이 고시는 2011년 5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5. 20>

1. 이 고시는 2011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10. 27>

1. 이 고시는 2011년 10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계우대정기적금 가입한도는 2011년 10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거치식예금의 이자계산방식 및 이웃사랑정기예금 분할해지는 2011년 11월 11

일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거치식 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이자계산방식을 계속 적용한다.